

북한의 '자력갱생'을 위한 축적체계의 전환: 1957년 제도개혁을 중심으로*

이영훈(고려대 강사)

◁ 목 차 ▷

- I. 머리말
- II. 원조단절에 따른 축적위기와 1957년의 경제제도 개정
- III. 경제제도 개정에 따른 축적체계 변화의 실상
- IV. 축적체계 전환이 소득분배 및 성장에 미친 영향
- V. 맺음말

I. 머리말

북한은 1950년대 후반 자력갱생을 원칙으로 하는 '자립적 민족경제노선'을 공식화하기에 이른다. 이후 자립적 민족경제노선은 북한의 제반 경제정책을 지배하는 기본노선이 되어 왔다. 이러한 자립적 민족경제는 "생산의 인적 및 물적 요소들을 자체로 보장할 뿐 아니라 민족국가 내에서 생산소비연계가 완결되어 독자적으로 재생산을 실현하여 나가는" 경제체제를 의미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다방면적이고 종합적인 경제구조"를 갖게 된다(『경제사전2』, 1985). 이런 측면에서 자력갱생 원칙은 분업 및 전문화를 전제로 하는 비교우위와는 반대의 논리에 입각하여 있다고 볼 수 있다.

*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1961년 12월 제15차 CMEA 회의를 계기로 소련과 동구사회주의국가들은 자급자족적 경제체제를 한계를 인식, 기존 노선을 폐기하고 「사회주의 국제분업의 기본원칙」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사회주의 국제분업 추세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재생산구조를 추구하는 자립적 민족경제노선을 채택하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자원빈국이면서 소국인 북한이 자립적 민족경제노선을 공식화한 배경과 그것의 내적 전제조건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기존의 논의는 매우 불충분하다. 단지 주체사상의 등장배경-소련과의 불평등관계와 이대 올리기갈등, 중국의 영향, 50년대 말의 경제건설에 대한 자신감, 중소분쟁, 대 남한 주체적 입장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파악하거나, 보다 직접적으로는 중소이념분쟁을 이용한 북한의 실리추구의 관점에서 해석해 왔다. 여기서 지적된 요인들 가운데 50년대 말 북한당국의 경제건설에 대한 자신감을 제외하면 모두다 정치적이고 대외적인 요인들로서, 그 내적 전제조건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제적 측면에서 자립적 민족경제노선 공식화의 내적 전제조건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점에 주목하는 이유는 외적인 배경도 중요하지만, 내적인 전제가 보장되어야 자력갱생 경제체제로의 전환이 가능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다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해 현재 북한 축적체계의 원형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사회주의의 일반적인 축적체계를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북한에서 1950년대 말 원조 단절을 계기로 전개되었던 축적체계 전환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성격, 그리고 축적체계 전환이 소득분배와 성장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 축적체계의 전환과 관련된 1957년의 주요 경제제도 개정에 대해 구체적인 실증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당시의 개정은 현 가격 및 조세 제도의 기본틀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현 북한경제 분석에 있어서도 중요성을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경제통계의 제약으로 엄밀한 실증분석은 쉽지 않은 작업을 밝혀두고자 한다. 따라서 자료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적 추정이나, 또는 현실에 근거한 가정을 통해 분석이 전개될 것이다.

II. 원조단절에 따른 축적위기와 1957년의 경제제도 개성

1. 사회주의의 축적¹⁾과 조세·가격체계

“축적하라 축적하라! 이것이 모세이며 예언자이다!”(가장 중요한 계율이 다) 고전파경제학이 ‘브르즈와 계급의 역사적 사명’을 표현한 축적을 위한 축적, 생산을 위한 생산이란 이 공식은²⁾ 사회주의국가들에서 ‘국가의 역사적 사명’으로 다시 한번 부활하였다.

고도의 축적은 고도의 성장으로 직결된다. 사회주의에서 성장과 자원배분의 관계는 ‘속도와 균형’이란 말로 요약되는데, 이 관계를 표현한 서술에서 당위론적인 수식어들을 제거하고 나면, 속도는 목적이고 균형은 그를 위한 수단이었음이 드러난다.³⁾ 여기서 축적은 속도를 창출하기 위해 자원배분에서 가장 먼저 고려되는 개념이다.⁴⁾

사회주의에서 축적을 위한 주된 수단은 국민소득의 약 2/3 정도를 차지할 만큼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재정이다. 그리고 가격에는 조세수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간접세 성격의 ‘거래수입금’(turnover tax)과 법인세 성격의 ‘국가기업이익금’(deductions from enterprise profits)이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사회주의의 가격은 조세수입의 주된 통로가 되고, 조세수입은 계획된 성장을 위한 축적의 원천이 된다. 여기서 ‘가격차’는 가격(및 조세)과 축적을 연결하는 통로가 된다. 즉 공산물의 도

1) 사회주의에서 ‘축적(accumulation)’은 서구의 투자개념에 대응한 맑스의 용어로서, 일정한 기간 동안 생산되었으나 소비되지 않은 국민소득의 몫이다: A=NY-C. J. Wilczynski, *Economics of Socialism* (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Ltd., 1982), p. 61.

2) K. Marx, 김수행 역, 「자본론1」 (서울: 비봉출판사, 1991), p. 753.

3)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영훈, “북한의 성장전략과 위기의 기원: 1956-64년,” 한국사회경제학회, 「신자유주의와 국가의 제도전(사회경제평론13호)», (서울: 풀빛, 1999)를 참조할 것.

4) 사회주의 경제계획 작성에서 일차적으로 성장률을 정하고 나면 그 다음 정하는 것이 이를 달성하는 데 요구되는 축적률이다. M. Kalecki, “On the Method of Constructing a Perspective Plan,” 1957, *Collected Works of Michal Kalecki III* (Oxford: Clarendon Press, 1992).

매가격과 소매가격간의 차이(거래수입금)와 곡물의 시장가격과 소매가격의 차이가 축적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회주의에서는 어떤 이유에서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축적재원 조달에 가격차를 이용하는 것인가?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이유는 시장경제에서는 축적의 재원이 주로 저축을 통해 조달되기 때문이다.

첫째, 축적의 재원을 간접세 성격을 갖는 거래세에서 구하는 이유는 낮은 소득수준에 따른 낮은 저축성향과 직접세부과에 따른 생산활동 위축 가능성 때문이다. 즉 사회주의처럼 빈부격차가 크지 않은 나라에서는 증가된 소득의 대부분이 소비로 돌러지기 쉽고 증가된 소득의 일부분만이 저축된다. 이것은 그 이전의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더욱 그렇다. 또한 소득이 노동소득으로 구성된 사회에서는 높은 세율의 소득세는 생산활동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⁵⁾ 따라서 사회주의에서는 국가주도로 조세 특히 간접세 중심으로 축적체계를 구축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주의에서의 거래세는 투자지출이나 국방비지출이 증가할 때, 그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일례로 소련에서 1차5개년계획(1928-32년) 기간중 투자수요와 국방비 지출이 급증하였는데, 이를 1930년 조세개정을 통해 과거의 공업인가세를 계승한 거래세의 신설로 충당하였다.⁶⁾ 또한 이것은 거래세의 크기를 정하는 다음의 논리에서도 잘 드러난다. 폐쇄경제 하에서 소득은 노동소득만으로 이루어지고, 그 소득은 모두 소비재 구입에 사용되며 신규투자가 없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총임금 wx (임금수준 w , 노동자총수 x)은 재화의 총비용 그리고 소매시장에서의 주민의 총지출과 같아야 한다: 소득=생산비=지출= wx . 그러나 만일 순투자가 발생하고 그에 따라 노동력의 일정 비율 I/y 가 새로운 공장 설비, 반제품이나 생산수단의 비축 확대에 사용된다면, 소비재의 공급과 국민지출 사이의 위의 식은 더 이상 성립되지 않을 것이다. 즉 전자가 후자보다

5) M. Dobb, *Soviet Economic Development Since 1917* (London: Routledge & Kegan, 1972), 임휘철 역, 「소련경제사」, (서울: 형성사, 1989), p. 450.

6) 30년대 초에는 이 거래세 때문에 세입이 증가하였고 40년대에는 무려 연방예산 수입의 70%까지 차지하였다. 이 10년 동안 투자지출과 국방지출의 상승곡선과 거래세에 의한 세입의 증가사이에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를 찾아볼 수 있다. Ibid, pp. 293~448.

$wx \cdot I/y$ 만큼 작아질 것이다. 왜냐하면 소매시장에서 주민의 총지출은 여전히 wx 이나 그 기간동안 소비재생산의 비용은 $wx \cdot (y-I)/y$ 일 뿐이며, 결과적으로 주민지출-소비재생산비용 = $wx - wx \cdot (y-I)/y = wx \cdot I/y$ 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총소비 지출과 비용가격으로 평가된 소비재 공급 사이의 차이는 수행된 투자지출(소비재의 임금비용과 관련된)의 양에 비례할 것이다. 투자지출에 적용되는 것은 다른 지출, 예컨대 군비지출에도 적용될 것이다. 이때 소비지출과 소비재공급 사이의 괴리는 소비재 소매가격을 $wx \cdot I/y$ 만큼 그 비용 이상으로 인상시킴으로써 조정된다. 그 인상이품이 거래세의 크기가 된다.⁷⁾

둘째, 농산물의 가격차는 소련의 프레오브라젠스키(Preobrazhensky)의 '사회주의 원시축적이론'에서 제시된 사회주의 초기의 축적방식이다. '사회주의 원시축적이론'은 맑스의 '자본의 원시축적이론'을 사회주의에 적용한 것으로서, 사회주의 초기에 국가가 자본을 어떻게 축적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그것은 자본가가 처음에 '수탈'을 통해 자본을 축적할 수 있었듯이(자본의 원시적 축적), 사회주의국가도 잔존하는 자본가계급(부농층)에게서 자본을 '수탈'할 수 있다(사회주의의 원시축적)는 것이다. 이것의 구체적인 방안이 바로 농산물의 가격차를 이용하여 공업이 농업임여를 '수탈'하는 것이다. 즉 국가의 농산물 가격조작에 의해 도시(공산품)와 농촌(농산물)간의 부등가교환을 달성시킴으로써, 자원을 농업부문(사적 또는 사회적 소유)에서 공업부문(국가소유)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이는 제국주의에 포위된 상황에서 초기 축적의 대상을 내부에서 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반영한다.

요약하면, 사회주의에서 주된 축적재원은 저축이 아니라 가격차에 따른 국가수입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공산품의 도·소매가격의 가격차(거래세)와 곡물의 시장가격과 수매가격의 가격차에 따른 수입이 국가에 의해 축적의 재원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따라서 조세 및 가격체계의 변동은 축적체계의 변동을 수반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런 사회주의의 전형적인 축적 방식이 북한에서도 재현되었는가? 이러한 의문이 제기되는 것은 당시 전후복구가 마무리된 시점이었

7) *Ibid.*, pp. 446~447.

지만 여전히 소비재 부족으로 곡물을 비롯한 주요 필수품의 배급제가 실시되고 있었고, 식량자급조차 어려운데다 '수탈'대상인 부농층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살펴보기로 하자.

2. 원조단절과 축적위기

한국전쟁으로 인한 북한의 피해는 참혹한 것이었다. 당시 북한자료에 따르면 한국전쟁으로 인한 피해액은 42억원 정도이며, 이는 1949년도 국민소득의 6배에 달하는 액수였다.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후복구기 및 1차5개년계획기간 동안 북한은 '기적'이라 할만한 고속성장을 기록하였다.

〈도표 1〉 국민소득의 증가지수

1949	1953	1956	1957	1958	1959	1960	1961	1962	1963	1964
100	70	146	200	285	305	328	389	416	445	479

출처: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평양: 조선중앙통신사, 각년도)를 참조하여 작성.

그런데 이런 성과는 사회주의국가들의 원조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1954-56년 사이 북한의 총수입량의 80% 이상은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로부터 들어온 무상 및 차관에 의한 원조품이었다. 이 기간의 연평균 원조액은 전체 세수입의 1/4에 이르렀다. 국가경제의 총투자액에서 차지하는 몫은 훨씬 높은 것이었다. 1954-56년 사이 북한은 원조의 약 80%를 주요 건설사업에 할당했다.⁹⁾

더욱이 원조의 기여를 보다 잘 보여주는 것은 양적인 지표보다 질적인 지표이다. 일례로 1950년대 소련이 북한에 제공한 기술원조의 내역을 살펴보자. 이때에 재건 신축된 산업들이 북한의 전체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8) 조선로동당출판사, 「기본건설사업발전을 위한 우리 당의 정책」, 1961, p. 12.

9) Natalia Bazhanova, 양준용 역, 「기묘에 선 북한경제: 대외경협을 통해본 실상」(서울: 한국경제신문사, 1992), p. 24.

비중은 다음과 같다(1960년 당시)¹⁰⁾: ▲전력: 40% ▲선철: 51% ▲코크스: 53% ▲강철: 22% ▲압연철판: 33% ▲전기 동: 100% ▲전해질아연: 44% ▲정제된 금·은: 100% ▲초석: 90% ▲시멘트: 18% ▲면사: 67% ▲합판: 100% ▲통조림: 100%. 이처럼 당시 주요 산업시설의 대부분이 원조를 통해 복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원조가 북한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컸던 만큼, 원조의 단절은 축적체계의 위기로 전개될 가능성을 안고 있었다. 이러한 가능성은 우선, 1956년 6-7월 제1차 5개년계획(1957-60)의 축적재원의 문제 해결을 위한 김일성의 외국방문이 실패하고 56년 '8월 종파사건'을 계기로 대외관계가 악화됨에 따라 충분히 예견될 수 있었던 것이다.¹¹⁾

따라서 북한은 과거처럼 원조에 의한 축적방식에 큰 기대를 할 수 없게 되었으며, 새로운 축적체계를 모색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러한 사정은 다음과 같은 기록을 통해 확인된다.

“대외원조수입은 그의 대부분이 이미 전후 년간에 진행된 기본건설과 기 자재수입에 충당되었으며 그리하여 1956년도에 비하여 1957년에 감소될 것이 예견됨으로써 1957년 국가예산은 주로 국내의 축적에 의하여 집행되어야 할 것이 예측되었다.” ... 그러므로 조선로동당 1956년 12월 전원회의에서는 “1957년도 계획작성에서는 인민경제의 발전과 인민생활의 향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재정지출을 현저히 증대시켜야 할 필요성과 대외원조수입의 감소로 인하여 제기되는 재정적 보장(재정발란스)의 긴장성과 관련하여 물자소비와 재정지출에서 엄격한 절약제도를 확립”할 것이 지적되었다.¹²⁾(강조는 필자)

1957년도 북한의 가격 및 조세제도의 개정은, 이러한 사정을 배경으로 시도된 전후 원조경제에서 자력갱생경제로의 전환을 시사한다. 이것은 57년도의 여러 제도개정이 “조선로동당 1956년 12월 전원회의 결정 정신에

10) *Ibid.*, p. 51.

11) 정전직후인 3개년 계획기간에는 소련으로부터 10억루블을 원조 받았으나 이번에는 3억루블에 불과하였고, 동구제국으로부터도 성과가 거의 없었다.

12)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58』, p. 129.

입각"하여 진행되었다고 밝히고 있는 데서 드러난다.¹³⁾ 12월 전원회의 정신은 그들의 표현대로 하면 "자력갱생의 혁명적 원칙과 당의 혁명적 균중노선을 관철하여 부닥치는 난관과 시련을 맞받아 진공적으로 뚫고 나가는 것"¹⁴⁾이라 요약될 수 있다. 자력갱생으로의 전환을 반영하듯 이 회의를 전후로 "소련으로부터 배우자"는 구호가 "12월 전원회의 정신을 관철하자"로 대체되었다. 즉 이 시기 이후 북한의 소련에 대한 우호적 태도는 자취를 감추게 되었으며, 내부자원의 동원을 통한 증산 즉 내부축적체계에 근거한 고속성장이 강조되기 시작한 것이다.

한편 그 대안으로 북한은 1958-65년 동안 중국과 매우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였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CMEA의 사회주의 국제분업론에 대한 반발-농산품과 원자재공급국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반발-이 자력갱생노선¹⁵⁾으로 표출되었을 뿐 아니라, 이에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중국의 지원을 받게 된 것이다. 이는 자원빈국인 북한이 자력갱생을 추구하였지만 결코 폐쇄적인 자립경제노선을 추구하지 않았으며, 소련이나 중국에 일정 정도 의존적일 수밖에 없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고 중국의 지원이 원조단절의 충격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참고로 통일원의 자료에 따르면, 1950년대 사회주의국가들이 북한에 제공한 무상원조액은 127,844만달러, 차관 37,493만달러인 반면, 1960년대 무상원조는 없었으며, 차관은 33,668만달러에 불과했다.¹⁶⁾

요컨대 전후 북한경제에서 원조의 기여가 컸던 만큼, 1956년 당시 가

13)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58」, p. 130.

14) 1956년 12월 전원회의는 북한에서 사회주의 건설의 대고조와 천리마운동의 발단을 열어놓은 역사적 회의라고 평가되고 있다. 안팎의 어려운 정세속에서 "계획완수의 결정적 고리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내부예비를 백방으로 동원이용하며 설비의 이용률을 높이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증산하고 절약하여 5개년계획을 기한 전에 넘쳐완수하자!>라는 전투적 구호를 제시하시었다. 자력갱생의 혁명적 원칙과 당의 혁명적 균중노선을 관철하여 부닥치는 난관과 시련을 맞받아 진공적으로 뚫고 나가는 것, 바로 이것은 전원회의의 기본정신이 되었다." 사회과학출판사, 「경제사전2」, pp. 338-339.

15) 바자노바는 「기रो에 선 북한경제: 대외경험을 통해본 실상」에서 북한의 '자력갱생' 아이디어는 중국의 영향으로 보고 있다.

16) 국토통일원, 「북한경제통계집: 1946-85」, 1986, p. 809.

시화되고 있던 원조의 단절은 축적위기의 가능성을 안고 있었다. 이에 북한은 이듬해인 1957년 서둘러 경제체도의 개정을 단행하게 되었는데, 이는 자력갱생의 축적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시도였다고 본다.

3. 1957년도의 경제제도 개정

1957년도에 개편 실시된 제반 제도들¹⁷⁾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공업부문의 가격 및 세율조정과 농업부문의 수매방식 및 수매가격의 조정이다. 이들 개편은 모두 가격조정(세율조정을 포함)을 통해 축적의 재원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품의 도매가격 및 요금의 개정실시」(1957.4.1)에 따른 ①「가격차금지도」의 폐지 및 거래세로의 통합, ②생산수단에 대한 거래수입금의 전면적 폐지(거래수입금 징수 소비재에 집중), ▲이익공제금납부제도의 개편(1957.10.1)에 따른 국가기업이익금의 비율 조정,¹⁸⁾ ▲식량을 제외한 소비재의 배급제폐지: 고무신류, 布貨류(과거 화폐역할을 하던 천류), 그리고 양말류의 배급제 폐지(1957.1.1),¹⁹⁾ 식량을 제외한 일체 소비재의 배급제 폐지(1958.1.1)²⁰⁾ 등이다.

「가격차금지」의 간접세로의 통합은 1957년에 접어들면서 국가의 통제가 소비재의 생산뿐 아니라 유통부문까지도 확실하게 미치게 되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 생산과 유통과정에서 중복과세 되던 것들이 생산과정에서의 과세로 단일화되었다.²¹⁾ 한편 과거에는 생산수단과 소비

17) 거래세법 개정, 이익공제금 납부제도의 개정, 기업소기금에 관한 규정의 개정, 기술생산재정계획의 도입, 기업소 내부채산제의 실시, 유동자금회전률의 축진을 위한 일련의 조치 등(「조선중앙년감58」, p. 130)과 곡물수매제도 및 수매가격의 개정이 그것이다.

18)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58」, p. 130; 안광준, 「우리나라 인민경제에서의 사회주의적 축적」(평양: 사회과학원출판사, 1964), p. 163.

19) “질의응답: 배급제는 왜 필요하며 어떤 때라야 폐지될 수 있는가,” 「근로자」, 제10호(1956), pp. 138~139.

20) 조룡식, “우리나라 상업의 발전,” 「우리나라 인민경제발전」(평양: 국립출판사, 1958), p. 256, 김연철, “북한의 배급제위기와 시장개혁전망,”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1997), p. 6에서 재인용.

21) ‘가격차금지’은 소비재의 자유시장가격이 국정가격보다 높을 때, 투기를 목적으로 소

재 모두에 부과되었던 거래세가 소비재에만 부과됨으로써, 주민들의 조세 부담이 급증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거래세 및 국가기업이익금 비중의 조정은 생산수단 및 소비재 가격체계의 변화를 낳았다. 이와 더불어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실시해오던 식량 및 필수품에 대한 배급제가 1958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식량을 제외하고 폐지되었다. 북한의 「경제사전」에 따르면, 배급제란 “공급량이 제한되어 있는 상품의 분배와 소비를 조절하기 위한 임시적인 제도”로 규정되고 있으므로, 배급제의 폐지조치는 소비재공급이 확대²²⁾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다음의 표에서 1957년 전후로 한 증가지수의 변화에서 입증된다. 한편 소비재의 공급확대는 주민들의 소득증가를 전제한다. 이러한 소득증가와 소비재공급확대가 1957년도에 가격·조세제도 개정을 가능케 했다고 하겠다.

〈도표 2〉 소비재의 총유통증가지수

1949	1953	1954	1955	1956	1957	1960	1961
100	64	94	90	119	187	317	355

자료: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각년도를 참조하여 작성.

주: 사회금양(배급)을 포함.

둘째, 1957년 국가수매 중심으로의 수매제도 전환으로, 이후 국가가 곡물수매와 판매를 독점하게 되었다.²³⁾ 곡물유통의 국가독점은 국가의 독점

비제가 사회주의 상업기관으로부터 자유가격이 통용되는 비조직시장(자유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징수했던 세금이다. 안광중, 「우리나라 인민경제에서의 사회주의적 축적」, pp. 165~166.

22) 본고에서는 거래세의 거시경제적 측면에서의 역할만을 언급했으나, 미시적 측면에서는 소비재공급량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이 되기도 한다. 박진, “북한재정의 현황과 추이,”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1985), p. 67.

23) 국가수매로의 수매제도 전환은 이것의 필요성을 주장한 ①김운중의 논문과 ②1958년의 곡물수매에서 급격히 국가수매가 증가하고 협동조합 자체수매가 하락한 데서 나타나고 있다.

“국가수매사업은 중대한 정치적 과업이다. …… 이것은 우리나라 경제체계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양곡행정은 협동단체에서보다 국가가 담당하는 것이 합리적인바 만약 집체적 수매량까지 소비협동조합에서 담당하게 된다면 필요 이상의 부대비를 산생시키게 될 것이라는 데서 설명된다.” 김운중, “1957년도산 양곡수매사업의 성

적 가격설정을 가능케 하였다. 이를 토대로 국가는 곡물의 수매가격을 시장가격보다 낮게 책정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공업과 농업간의 부등가 교환에 의해 농업잉여를 공업으로 이전시킬 수 있게 되었다.²⁴⁾ 이외에도 공업발전의 중요한 축적재원이었던 농업현물세를 고려해야 한다.²⁵⁾ 그러나 농업현물세는 59년 이후 비중이 대폭 줄어들면서(1955년 이전에는 수확고의 25%, 1956~58년 22.4%, 1959~64년 8.4%, 1966년 농업현물세폐지) 곡물수매가 농업잉여수탈의 주된 수단이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농업현물세의 감소는 그만큼의 농가소득을 증가시키는데, 이것은 수매량의 확대 및 수매가격의 인하에 의해 상쇄되었다.

요약하면, 1957년도 실시된 공업부문의 가격 및 세율조정과 농업부문의 수매방식 및 수매가격의 조정은 원조단절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내부

과적 보장을 위한 제 방도," 「경제건설」(평양: 경제건설사, 1957, 10). pp. 37~41.

국가수매 및 자체수매량 추이

단위: 천톤

년 도	1954	1955	1956	1957	1958
국가수매	37	76	144	304	495
자체수매	106	145	113	187	97

자료: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각년도를 참조하여 작성.

주: 1958년 이후 국가수매와 자체수매의 구분이 없어지는 것으로 보아, 국가수매로 단일화된 것으로 보인다.

- 24) ▲“현 단계에 있어서 수매가격은 가치 이하로 제정되면서 농민들이 생산한 순소득의 일부가 공업의 발전을 위하여 인입되어야 한다.” 정태식, “계획가격 형성과 관련한 몇 가지 문제,” 「경제건설」, 1957.10. p. 81; ▲“국가는 수매가격을 제정할 때에 농업에서 조성된 순소득의 일부를 전 인민적 수요를 위하여 동원할 목적으로 수매가격을 가치보다 낮게 설정할 수 있다. 사회주의국가가 농촌으로부터 농산물을 수매할 때에 각종 수매가격의 평균가격이 가치보다 낮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 현물세 수입만으로써는 사회주의건설의 현 단계에 있어서 경제발전의 요구에 적응하는 순소득의 재분배는 만족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 여기로부터 금후 수매가격을 통하여 이 순소득의 재분배를 보충적으로 진행할 대책이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금년에 우리는 자본주의사회에서 ‘보리고개’라는 6월에 알곡수매가격을 인하시켰다.” 남춘화, “현 시기에 있어서 농산물수매가격 제정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 「경제건설」, 1957.11. p. 73.
- 25) “농민들이 국가에 바치는 현물세는 노동자, 사무원들의 식량을 보장하며 공업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는 데서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김일성, “우리나라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제4기제8차 전원회의에서의 연설) 「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2」, 1964, p. 660.

축적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시도였다. 이는 북한만의 축적방식이 아니라 사회주의 일반적인 축적방식을 수용한 것으로서, '가격차'를 이용하여 축적재원을 내부에서 즉 주민들의 소득에서 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즉 거래세 부과대상이 소비재(공산품)로 국한되면서 소매가격과 도매가격의 차(거래세) 만큼 소비자들 소득의 일부가 축적재원으로 이전되었고, 곡물수매가격의 인하로 시장가격과 수매가격의 차만큼 농민소득의 일부가 축적재원으로 이전되었다고 할 수 있다.

Ⅲ. 경제제도 개정에 따른 축적체계 변화의 실상

1. 조세 및 도매가격개정의 결과

조세 및 가격체계의 개정이 축적체계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제도개정을 전후로 한 조세 및 가격체계의 변화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 거래수입금비율의 변화와 관련된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

“1957년 도매가격 개정 직전인 1956년 공업부문의 재정계획에서 생산물 판매수입 총액 중 생산물 원가는 64.3%, 이윤은 17.6%, 거래수입금은 18.1%를 차지하였으며 국영공업부문의 수익성은 생산수단생산에서 21.7%, 소비재생산에서 36%에 달하였다. 1957년 가격개정에서 소매가격의 수준은 변동시킴이 없이 기업소 도매가격을 개정하여 가격구성에서 수익성률이 3~5%로 조절됨으로써 이윤의 폭은 축소된 반면에 거래수입금의 폭은 확대되었다. 도매가격 개정 전인 1956년 재정계획에서 공업부문의 이윤과 거래수입금간의 상호관계는 1 : 1.03이었는데 도매가격 개정 이후인 1958년 개정계획에서 인민경제 총이윤과 거래수입금간의 상호관계는 1 : 2.9로 변동되었다.”²⁶⁾

“이를 위하여 도매가격이 새로 비준되었으며 소매가격의 구성요소가 달라졌다. 이상과 같이 원가수준의 변동(노임의 인상, 원재료비 및 감가상각비의 변동 등으로 약 30% 제고됨)을 타산하고 이윤의 폭을 조절하였으며 거래세의 징수를 기본상 폐지한 결과 도매가격의 수준에 일정한 변동이 생겼다. 물론 부분적으로 인상된 것도 있으나 공업생산물 총체적으로 볼 때 약 6%가 종전보다 저하되었다.”²⁷⁾

26) 안광집, 「우리나라 인민경제에서의 사회주의적 축적」, p. 171.

이상의 기록을 토대로 제도개정으로 인한 조세 및 가격체계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1957년 이전의 조세 및 가격체계

앞에 제시된 관련된 기록을 토대로 계산한 결과(구체적인 계산과정은 <부록>을 참조), 조세 및 가격개정 직전의 가격구성은 다음과 같다(I: 생산수단생산부문, II: 소비재생산부문, C: 생산수단(중간재)의 가치, V: 임금, Sa: 이윤, Sb: 거래수입금).

$$\begin{aligned} \text{공업전반} \quad \{I(C+V)+II(C+V)\} : (ISa+IISa) : (ISb+IISb) \\ = 64.3 : 17.6 : 18.1 \end{aligned}$$

$$\begin{aligned} \text{생산수단 : 소비재} = \{I(C+V)+ISa+ISb\} : \{II(C+V)+II \\ Sa+IISb\} \\ = (1.52+0.33+0.51) : (1.00+0.36+0.20) \\ = 2.36 : 1.56 \end{aligned}$$

$$\begin{aligned} \text{생산수단} \quad I(C+V) : ISa : ISb = 1.52 : 0.33 : 0.51 \\ (= 64.4\% : 14.0\% : 21.6\%) \end{aligned}$$

$$\begin{aligned} \text{소비재} \quad II(C+V) : IISa : IISb = 1.00 : 0.36 : 0.20 \\ (= 64.1\% : 23.1\% : 12.8\%) \end{aligned}$$

공업전체의 가격구성

원가 64.3	이윤 17.6		거래수입금 18.1
	사내유보이윤 8.7	국가기업이익금 8.9	

* 주: ① 이후 논의의 편의를 위해 상업부가금 부분을 생략한다. ② 국가기업이익금의 비율은 50.8%(박진산, "1957년 정부예산," Goto, *Estimates of The North Korean Gross Domestic Product 1956-1959*, p. 240에서 재인용)를 적용했다.

27) 정태식, "계획가격 형성과 관련한 몇 가지 문제," 『경제건설』, 1957. 10, p. 85.

생산수단의 가격구성

원가 64.4	이윤 14.0		거래수입금 21.6
	사내유보이윤 6.9	국가기업이익금 7.1	

소비재의 가격구성

원가 64.1	이윤 23.1		거래수입금 12.8
	사내유보이윤 11.4	국가기업이익금 11.7	

각 부문 가격구성비를 볼 때, 1957년 이전의 조세 및 가격체계에서 상대적으로 생산수단 생산부문에서 이윤 비중은 낮은 반면, 거래수입금 비중은 매우 높았음을 알 수 있다.

나. 1957년 조세제도 및 도매가격 개정 이후의 공업부문 조세 및 가격체계

앞에서 제시된 기록을 수식으로 정리하여 추정한 결과(구체적인 계산과정은 <부록>을 참조), 1957년 조세 및 가격제도 개정 이후의 공업부문의 조세 및 가격체계는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text{생산수단 : 소비재} &= \{I(C+V) + ISa + ISb\} : \{\Pi(C+V) + \Pi Sa + \Pi Sb\} \\
 &= (1.98+0.08) : (0.94+0.10+0.52) \\
 &= 2.06 : 1.56
 \end{aligned}$$

$$\begin{aligned}
 \text{생산수단 } I(C+V) : ISa : ISb &= 1.98 : 0.08 : 0 \\
 & (= 96.1\% : 3.9\% : 0\%)
 \end{aligned}$$

$$\begin{aligned}
 \text{소비재 } \Pi(C+V) : \Pi Sa : \Pi Sb &= 0.94 : 0.10 : 0.52 \\
 & (= 60.3\% : 6.4\% : 33.3\%)
 \end{aligned}$$

$$\begin{aligned}
 \text{공업 전반 } (C+V) : Sa : Sb &= 2.92 : 0.18 : 0.52 \\
 & (= 80.6\% : 5.0\% : 14.4\%)
 \end{aligned}$$

공업 전체의 가격구성

원가 80.6	이윤 5.0	거래수입금 14.4
	사내유보이윤 1.9	국가기업이익금 3.1

* 주: 국가기업이익금은 60.9%(「1959년도 재정계획에 예견된 계획이윤의 분배(%)」²⁸⁾를 적용하였음.

생산수단의 가격구성

원가 96.1	이윤 3.9
	사내유보이윤 1.5
	국가기업이익금 2.4

소비재의 가격구성

원가 60.3	이윤 6.4	거래수입금 33.3
	사내유보이윤 2.5	국가기업이익금 3.9

1956년 공업부문의 재정계획 수치들을 근거로 하고, 생산수단 생산부문의 수익성률을 약 4%로 가정한다면, 1957년 개정을 전후로 공업 전반의 이윤과 거래수입금의 비중은 17.6% : 18.1%에서 5.0% : 14.4%가 되고, 국가기업이익금과 거래수입금의 비중은 8.9% : 18.1%에서 3.1% : 14.4%로 바뀌게 되었다. 소비재생산부문에서의 거래수입금은 과거 소비재가격의 12.8%에서 33.3%로 그 비중이 대폭 확대되었다. 더욱이 생산수단은 기업소가 소비하고 소비재는 주민들이 소비한다고 단순화해 본다면, 과거 기업소와 소비자 모두가 부담하던 간접세(기업소 부담 : 소비자부담 = 0.51 : 0.20)²⁹⁾가 1957년 제도개정을 계기로 소비자

28) 1959년도 재정계획에 예견된 계획이윤의 분배(%)

기본건설	자채유동자금	기업소기금	주택유지비	기타	국가예산납부	계
17.5	14.0	1.6	1.3	4.7	60.9	100.0

출처: 안광준, 「우리나라 인민경제에서의 사회주의적 축적」, p. 169.

29) 소비재생산에 생산재의 일부가 투입된다. 따라서 제도개정이전에 생산재에 부과된

가 거의 대부분을 부담하게(기업소 부담 : 소비자부담 = 0.00 : 0.52) 된 것이다.

이처럼 거래수입금이 생산수단에 부과되지 않고 소비재 생산부문에 집중된다는 것은 맑스의 가치론에 따르면, 소비재가격이 그 가치보다 높게 설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통상적으로 생각하듯이 맑스의 이론을 따르는 사회주의국가에서 맑스의 가치법칙이 준수될 것 같으나, 오히려 가치와 가격의 괴리를 통해 축적의 재원을 마련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생산재부문에 대한 거래세를 폐지하고 소비재에만 부과한 것은 징수체계의 번잡성의 시정과 신속적 가격조정을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³⁰⁾ 보다 중요한 이유는(드러낼 수 없는 것이지만) 중공업축적의 원천을 경공업의 잉여, 즉 주민들의 소득에서 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소비재의 상대가격이 상승하게 되었고(생산수단가격 : 소비재가격 = 2.36 : 1.56 에서 2.06 : 1.56), 거래세/총세입은 1956년 27%에서 57년 47%, 58년 60%로 거래세의 비중이 대폭 확대되었다.

2. 수매가격인하

곡물수매체제 개정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제도개정을 전후로 한 수매체제의 변화 및 가격변동을 살펴보도록 하자. 북한은 공식적으로 50년대-60년대 중반까지 곡물가격을 밝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를 간접 추정할 수밖에 없다.

· 관련 기록³¹⁾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1960년대 중반에 들어서

거래세의 일부가 소비재의 가격에 전가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제도개정 이전 소비자의 간접세부담비율이 본문에 제시된 비율보다 증가하게 된다.

30) 정태식, “계획가격 형성과 관련한 몇 가지 문제,” p. 85.

31) 이를 위해 관련된 기록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954년도 쌀의 시장가격 1kg당 60~70원(1959년 화폐개혁이후 가격으로 60~70전). Бэк Чжун Ки, СТАВЛЕНИЕ ПОЛИЧЕСКОЙ СИСТЕМЫ В ВКДР И РОЛЬ СССР (после корейской войны), Издательство Москов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Москва, 1997), p. 92. ▲“1957년에 수매가격은 1956년에 비하여 양곡을 비롯해 저류 82%로, 채소 81%로, 과일 82%로, 육류 87%로 저하되었다.”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58」, pp. 135~136. ▲“(1960년)전반적으로 수매가격을 높이었으며...”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61」, p. 180; “공예작물, 축산

면 쌀의 수매가격이 1kg당 60전으로 1954년도의 시장가격 수준을 회복한다는 것이다. 둘째, 기록에서 나타나는 알곡가격의 인상시점(1960, 1965, 66년)은 흉작으로 보도된 시기의 다음 해이다. 이를 통해 알곡가격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요공급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60년대 중반 이후 알곡의 가격은 리진규(1986)와 공산권문제연구소(1968), 극동문제연구소(1974) 등의 기록에서 구해볼 수 있다. 리진규에 따르면, 시기가 불분명하지만 전체 알곡의 가격은 1kg당 약 33전(리진규, 알곡가격은 100원/300kg=33전)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그런데 분석기간의 곡물가격 변동을 파악하기에는 자료의 부족으로 직접 추정이 불가능하다. 단지 파악할 수 있는 사실은 57년도의 알곡가격이 전년도 대비 82%였고, 1960년과 1965-66년간에 알곡가격이 상승했다는 사실 정도에 불과하고, 구체적으로 얼마나 상승했는지, 그 기간 동안 어느 정도 변화하였는지 파악할 수가 없다. 따라서 알곡가격에 대한 추정 은 불가피하게 간접적인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는 다음과 같이

물수매가격의 인상"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64」, p. 188. ▲ (1965-66년)일부 농산물에 대한 수매가격을 높여주는 등으로 막대한 추가적 혜택을 주었다.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66-67」, p. 227. ▲ 1kg당 수매가격 쌀 60전, 벼 45전, 밀 60전, 강냉이 30전, 고구마 24전, 감자 15전. 극동문제연구소, 「북한전서 中」(서울: 극동문제연구소, 1974), p. 196; 수매가격 1kg당 쌀 62전 소매가격 8전(1979년 현재). 현대조선문제강좌 편집위원회, 「社會主義의經濟」, 1988, p. 183; "국가는 주식물인 쌀은 60전에 수매하여 8전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사회과학출판사, 「경제사전1」, p. 148. ▲ "현물세를 없애는 것은 국가가 협동농장에서 무상으로 받아오던 농산물을 국가자금으로 사온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협동농장은 생산물 가운데서 더 많은 량을 개인소비품에 돌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한다. 현물세를 없애므로써 우리 농민들의 수입은 호당 적어도 100원씩 더 늘어났다. 이것은 호당 양쪽으로 300kg씩 더 차례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리진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사회주의적농업로동보수제에 관한 리론」(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6), p. 37.

▲ 알곡 1kg당 수매가격

	벼	쌀	옥수수	콩	팥	조	밀
1등급(전)	45	66	38	40	55	40	65
4등급(전)	38	55	30	35	38	38	55

자료: 공산권문제연구소, 「북한총감 '45-68」(서울: 공산권문제연구소, 1968), p. 347

농가의 소득 및 소비구조를 통해 알곡가격을 추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우선, 북한 농가의 소득분배는 화폐소득과 현물소득의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현물분배는 모두 자가소비(음식비)에 충당하고 현금분배는 음식물을 제외한 나머지 소비에 충당한다는 가정을 세울 수 있다. 물론 음식비 중에는 분배된 현금으로 구입하는 물품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현물분배 중에는 시장에 내다 파는 품목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그 비중이 매우 작으며 서로 상쇄된다고 가정한다.³²⁾

이러한 가정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식을 세울 수 있다.

$$\text{호당농가총소득} = \frac{\text{호당농가현금분배}}{\text{총소비} - \text{음식비}} = \frac{\text{호당농가현금분배}}{\text{현금소비}} = \frac{\text{호당농가현금분배}}{\text{현금소비비중}}$$

$$\text{호당 농가의 현물분배} = \text{호당 농가 총소득} - \text{호당 농가 현금분배}$$

둘째, 여기서 계산된 농가 호당 현물분배를 호당 현물분배량으로 나누어준다. 알곡가격 = 호당 현물분배(원)/호당 현물분배량(알곡+저류/4). 여기서는 알곡과 저류의 가격비는 고정된 것은 아니나, 자료의 부족으로 4:1로 가정한다.³³⁾

이상의 과정을 통해 계산하면, 다음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32) 이 가정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계획수매를 강화하기 위하여 협동농장 생산계획과 수매계획을 맞물리고 협동농장이 생산한 생산물 가운데서 자재의 생산적 및 비생산적 소비량을 제외한 전량을 수매하도록 하였다.” 김춘성, 「도시와 농촌의 경제적관계 실현경험」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9), p. 75; “농촌주민의 현금수입원천은 기본적으로 노력일에 의한 분배에 의존하고 있다. 농민시장에서의 농민들의 현금수입은 그 비중이 높지 못할 뿐 아니라 정상적이 못된다. 농촌주민의 현금지출정형을 보면 …… 현금지출의 대부분이 공업품구입과 그밖의 일시적 수요에 충당되고 있다.” 김석민 편, 「사회주의화폐제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6), p. 118.

33)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10만 정보의 감자와 고구마밭에서 정보당 30톤씩 내는 것으로 보면 300만톤인데 이것을 4대 1의 비율로 환산하면 75만톤의 알곡을 얻는 것으로 됩니다.” 김일성, “제2차 7개년계획작성방향에 대하여”, 「김일성저작집29」, p. 351.

〈도표 3〉 농가 1호당 소득 및 알곡가격

년 도	1956	1957	1958	1959	1960	1961	1962	1963	1964
현금분배(원)	95	137	203	224	300	400	450	489	489
음식비(%)		77	70	66	67	62	59		
나머지(%)		23	30	34	33	38	41		
호당총소득(원)	616	601	681	667	915	1,050	1,095	1,140	1,140
호당현물분배(원)		464	478	443	615	650	645		
호당알곡분배량(kg)	1,616	1,742	1,826	1,775	2,100	2,700	2,821	2,848	2,848
호당저류분배량(kg)	357	434	501	349	540	700			
알곡가격(1kg당 전)	30.37	25.07	24.51	23.77	27.50	22.60	22.86	22.86	22.86

출처: 국가계획위원회 중앙통계국, 「1946-1960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인민경제발전 통계집」(평양: 국립출판사, 1961);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각 연도; 통일원, 「북한경제통계집」, 1996을 참조하여 작성.

주: 호당 총소득, 호당 현물분배, 알곡가격 외에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수치는 추정치이며, 이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추정하였다. 1959, 62년의 통계: Kaplan and Moorsteen(1960)의 방법³⁴⁾을 이용하였다. 1964년의 통계: 김일성의 1965년도 신년사에 밝힌 1964년도 농업생산직황에 대한 설명에 근거하여 1964년과 같은 수준으로 가정하여 추정하였다.³⁵⁾

알곡가격은 1957년 82%로 하락했고, 흉년 다음 해인 1960년 상승했으나, 61년 이후 다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57-64년 기간의 알곡 가격은 1956년의 알곡가격 31전에 비하면 약 74~90% 정도의 수준에서 변동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소비구조를 이용한 알곡가격 추정은 농업통계의 과장(특히 1960년 이후의 통계과장³⁶⁾), "현금지출의 대부분

34) Kaplan, Norman M. and Richard H. Moorsteen, *Indexes of Soviet Industrial Output*, The Rand Corporation, RM-2495, Santa Monica, 1960, Fujio Goto, *Estimates of The North Korean Gross Domestic Product 1956-1959* (Kyoto: Kyoto Sangyo Univ. Press, 1990), pp. 73~77 참조.

35) "지난 해에 우리는 태풍으로 인하여 수십만톤의 농작물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알곡생산에서 1963년 수준을 견지하였습니다." 김일성, 「1965년 신년사」.

36) 다음 표에서 보듯이 북한의 1960년대 이후의 농업통계는 전반적으로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여기서는 총생산량 통계는 과장될 가능성이 크지만, 직접적으로 채감할 수 있는 호당 분배량과 같은 통계는 과장이 심하지 않을 것이라 가정했다.

분"이 음식비를 제외한 소비재구입에 충당한다는 가정,³⁷⁾ 1963. 64년 관련 자료의 부재로 1962년의 가격으로 추정하는 등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³⁸⁾

그러나 적어도 당시의 알곡가격은 1956년에 비하여 82% 하락하였고, 1957-64년 기간 동안 알곡가격은 농산물의 작황에 따라 1956년 가격의 $82\pm 10\%$ 정도의 변동을 해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농업현물세를 제외하면 적어도 국가가 가격차를 이용하여 농민들로부터 수매량의 $18\pm 10\%$ 정도를 '수탈'했다고 할 수 있다.

IV. 축적체계 전환이 소득분배 및 성장에 미친 영향

1. 소득분배의 추이

가. 도·농간의 소득추이

1957년도 제도개정은 농업과 공업부문에 상이한 가격차를 적용하였다. 이러한 상이한 가격차의 적용이 도시와 농촌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이

알곡생산량 추이

단위: 천톤

년 도	1956	1957	1958	1959	1960	1961	1962	1963	1964
알 곡	2,873	3,201	3,700	3,400	3,803	4,830	5,000	5,000	5,000

자료: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각년도를 참조하여 작성

37) 이렇게 가정한 것은 결과적으로 이를 토대로 한 1호당 농가소득의 비교시 1961년의 호당농가소득이 56년에 비해 1.57배가 되는데, 이 수치가 다음의 기록에 잘 부합하기 때문이다. "협동농민들은 농장으로부터의 분배 외에 축산을 비롯한 개인부업경리에서도 많은 수입을 얻었다. 이리하여 1961년에 농민들의 현물 및 화폐수입은 1956년에 비하여 1.6배로 장성하였으며 그들의 생활은 전반적으로 중농 또는 부유 중농의 수준에 도달하였다."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2」, p. 263.

38) 지금까지 당시 알곡가격에 대한 추정을 시도한 것은 Fujio Gogo가 유일한데, 추정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낮게 추정하고 있다. 그는 1957년도의 알곡가격에 대해 1t당 980.9원(Fujio Gogo, 1990: 304), 1959년의 화폐개혁을 고려하면 1kg당 9.809원으로 추정하였다. 본인의 추정에 비해 약 2.5배나 작다.

를 도시와 농촌간의 가구당 소득비교를 통해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도시가구의 소득을 살펴보자. 이를 위해서 먼저 노동자·사무원의 노동소득을 파악해야 한다. 다음의 결과는 「조선중앙년감」의 임금증가지수³⁹⁾와 1971년의 임금수준⁴⁰⁾을 결합하여 추정한 것이다.

〈도표 4〉 노동자, 사무원 평균임금 증가추이

단위: 원

년 도	1956	1957	1958	1959	1960	1961	1962	1963	1964
월평균	19.3	27.8	30.1	42.7	45.3	46.0	46.4	47.1	47.9
년평균	231.9	333.2	361.1	512.2	543.0	551.9	556.3	565.1	575.3

그런데 이러한 임금지표는 근로자 1인의 노동소득이므로 도시가구의 노동소득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도시가구의 노동력구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도표 5〉는 노동자·사무원의 남녀구성비를 나타내는 것이다.

〈도표 5〉 종업원 남녀구성비

단위: 원

년 도	전 체	남 성	여 성	남성비중	여성비중
1956	850	681	169	80.1	19.9
1960	1,506	1,013	493	67.3	32.7
1964	2,092	1,312	780	62.7	37.3

출처: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각 연도를 참조하여 작성.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1가구당 가장(남성)은 100% 취업하고, 1가구당 평균여성취업수(1956년의 경우)는 x라고 가정해 보면(681 : 1 = 169 :

39) 노동자, 사무원의 평균임금 증가지수

1946	1949	1953	1954	1955	1956	1957	1958	1959	1960	1961	1962	1963	1964	1971
55	100	105	127	141	165	236	257	365	386	392	394	402	410	601

출처: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각 연도를 참조하여 1949년을 기준으로 작성.

40) “1971년 현재 우리 나라 노동자, 사무원 한사람 당 한 달 평균 노임은 1946년에 비하여 11배나 장성되었다.”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73」, p. 279.

x , $x = 169/681$), 1가구당 노동소득 = 노동자 1인의 노동소득*(1 + x) 이 된다. 이상의 자료들과 가정을 토대로 도시가구의 노동소득을 추정해보면 다음과 같다.

- 1956년 노동자, 사무원 가계의 수입
= 231.9원*(1 + 169/681) = 289.4원(월 24.1원)
- 1960년 노동자, 사무원 가계의 수입
= 543.0원*(1 + 493/1,013) = 807.3원(월 67.3원)
- 1964년 노동자, 사무원 가계의 수입
= 575.3원*(1 + 780/1,312) = 917.3원(월 76.4원)

이상의 도시가구의 노동소득추정을 통해, 1960년 도시가구의 월 평균 소득이 67.3원, 1964년 76.4원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추정결과를 1962년 8월 당시 “노동자, 사무원 가족들의 수입 세대당 70~80원”이라는 기록⁴¹⁾과 1963, 64년의 노동자, 사무원의 세대당 수입증가지수의 기록⁴²⁾을 비교해볼 때, 추정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소득 추정만으로는 정상적인 도·농간의 비교가 불가능하다. 그것은 무엇보다 도시와 농촌에 대한 정부의 보조 및 사회문화적 혜택이 크게 다르고, 도시근로자와 농민에 대한 직접세부과체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도시가구에 대한 수매가격의 1/10⁴³⁾에 해당한다는 곡

41) “수상동지는 각 군에서 지금부터 잘 준비하여 1964년 5.1절까지 지방산업공장들을 철저히 정비강화하고 확대하여 생산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읍, 로동자구의 가정 부인들을 다 인입함으로써 로동자, 사무원 가족들의 수입을 세대 당 70-80원 으로부터 100원에까지 올려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군의 역할을 높이며 지방공업 과 농촌경리를 더욱 발전시켜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자,” 「근로자」, 1962. 8(하), p. 16.

42) 노동자, 사무원의 가구당 노동소득의 증가

년 도	1956	1957	1960	1962	1963	1964
증가지수	56	100	154	168	174	176
노동소득	289	521	807	876	907	917

출처: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각년도를 참고하여 작성.

주: 굵은 글자는 추정치로서, 1956, 60, 64년의 가구당 소득추정의 타당성을 근거로 다른 년도의 도시가구 노동소득을 추정한 것임.

물배급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의 시행년도나 그 비율의 변화에 대한 자료가 너무 부족하여,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소득격차가 나타났고 변해왔는지 추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1956~64년 기간 동안 도시 근로자들의 소득이 농민의 소득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했으며, 이는 도·농간 소득격차의 확대로 해석할 수 있다. 우선, 앞에서 추정한 농가 1호당 소득과 도시 1호당 소득 증가추이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1956~60년 기간의 농가 1호당 소득 증가율은 1.49(915/616), 도시근로자의 1호당 소득 증가율은 2.79(807.3/289.4)로서 도시근로자 1호당 소득이 농촌에 비해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1961~64년 기간의 농가 1호당 소득 증가율은 1.09(1,140/1,050), 도시근로자의 1호당 소득 증가율은 1.14(917.3/807.3)가 된다. 이런 추정은 다음과 같은 기록을 통해서도 일부 확인된다.

“1956-60년 기간 동안 농민들의 현물 및 화폐소득은 1.6배, 노동자, 사무원의 실질임금의 성장은 207.1%을 보이고 있다.”⁴⁴⁾

둘째, 이런 추세를 소득격차의 확대(특히 1950년대 후반)라고 해석하는 근거는 도·농간 인구이동에서 찾을 수 있다. 소득격차와 인구이동의 관련성의 측면에서 양자를 1956~60년과 1961~64년 기간으로 나누어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43) “생계비중 음식비에서도 양곡대금은 아주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 바 이것은 국가가 농민에게서 수매하는 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쌀 값으로 양곡을 노동자, 사무원들에 공급하기 때문이다.”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61」, p. 209.

44) 김덕윤, 「재정사업경험」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8), p. 86.

〈도표 6〉 도시농촌간의 인구비

	1956	1959	1960	1961	1963	1965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도 시	29.0	38.0	40.6	43.3	44.5	47.5
농 촌	71.0	62.0	59.4	56.7	55.5	52.5

출처: 통일원, 「북한경제통계집」, 1996, p. 103.

* 주: 1961년의 도시 : 농촌의 인구비는 56.7 : 43.3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전후 기간의 통계를 볼 때 오키라고 판단되어 43.3, 56.7%로 수정 기입하였음.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농간의 소득을 비교해 보면, 북한에서의 '사회주의 원시적 축적'은 1950년대 후반에 집중적으로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1950년대 후반 도시근로자들의 경우 임금이 대폭 상승한 반면, 농민들은 57년 제도개정 이후 도시주민과 같이 간접세의 부담을 지는 것 외에 수매가격인하로 인한 부담(농업현물세율의 감소에도 불구하고)이 가중된 데 따른 것이다.⁴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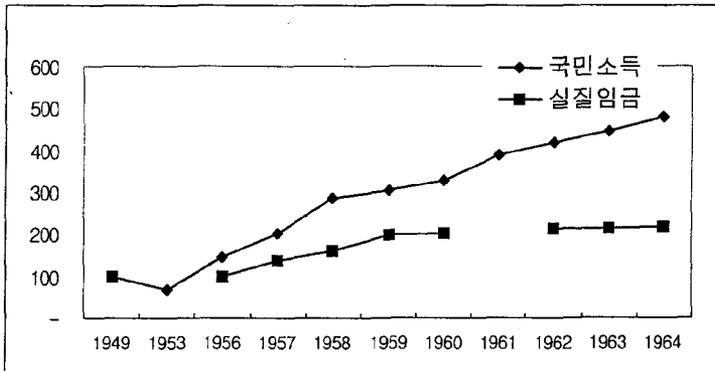
나. 소비와 축적의 추이

그렇다면 이 시기에 있어 전체 소비와 축적은 어떤 추이를 보여 주고 있는가? 당시 북한의 총소비와 축적의 추이는 다음의 국민소득 및 노동자·사무원의 실질임금 증가지수(둘 다 1949년을 100으로 함)를 통해

45) 이처럼 도·농간의 확대된 소득격차가 1964년도 「우리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 발표의 배경이 되었다고 본다. 김일성은 이 테제에서 사회주의공업화기 초가 축적되었으며, 이에 따라 농업의 공업지원에서 공업의 농업지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그에 따른 조치들로 농업현물세의 완전폐지, 농촌기본 건설자금의 국가 전액 부담, 농촌의 문화주택건설 국가 전액부담 등을 들고 있다. 김일성, "우리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 pp. 615~665. 그렇다고 이를 계기로 도·농간 소득격차의 문제가 해소된 것은 아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이 김일성이 5차당대회(1970)에서 여전히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다. "현 시기 인민생활을 높이는 분야에서 우리 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노동자와 농민의 생활수준에서의 차이, 도시와 농촌주민들의 생활조건에서의 차이를 빨리 없애는 것입니다."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5차 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 총화보고,"(1970) 「김일성저작선집5」, p. 475.

알 수 있다. 이들 증가지수를 분석에 이용하는 이유는 달리 자료가 없고, 다음의 논리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즉 국민소득이 소비와 축적(투자)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회주의의 낮은 저축성향과 소득의 대부분이 노동소득임을 고려하면, 임금의 대부분이 소비로 충당되고 축적은 국민소득에서 소비를 제외한 부분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소득과 실질임금 증가지수의 증가추이를 비교해보면, 간접적으로 소비와 축적의 증가추이를 비교할 수 있다.

〈그림 1〉 국민소득과 실질임금의 증가추이



출처: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각년도를 참조하여 작성.

여기서 확인되는 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국민소득증가추이와 실질임금증가추이의 격차가 커졌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시간이 흐를수록 축적을 위해 개인소비가 희생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성장을 위한 소비 희생'은 사회주의 보편적 현상으로서, 북한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특히 1959년 이후에는 실질임금의 증가율이 정체되고 있는데, 이는 1958년 6월 김일성이 「사회주의 건설의 대고조」를 선언함으로써, '속도'가 전에 없이 강조된 데 따른 투자지출 증대 및 60년대 경제·군사병진노선에 따른 군비지출의 증대의 필요에 따른 결과⁴⁶⁾라 해석된다. 즉 19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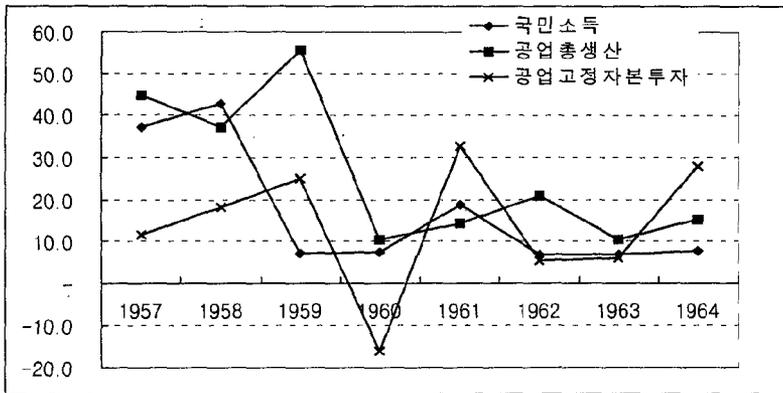
년 이후의 노동자·사무원의 실질임금 정체는 고도성장을 위해 늘어나는 투자수요와 준비확충을 위해 간접세증가와 수매가격 인하만으로는 그 재원을 충당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요약하면, 축적체계 전환의 결과 도·농간의 소득격차가 확대되었다. 이에 더해 투자수요의 확대 및 준비증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도시 근로자의 실질임금 수준을 거의 동결시킴으로써 축적재원을 확보했다.

2. 경제성장의 추이

북한은 대부분의 사회주의국가들처럼 중공업우선의 성장노선을 추구하여 왔다. 그것은 소련의 50년대까지의 고도성장의 경험뿐만 아니라 중공업의 우선발전이 자력갱생의 토대를 형성한다는 점에 근거한다.

〈그림 2〉 공업부문의 고정자본투자 및 생산증가율



출처: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각년도를 참조하여 작성.

앞서 살펴보았듯이 북한은 간접세의 증가, 수매가격인하, 실질임금의

- 46) 자본주의의 경우 준비확대의 재원은 임금삭감과 같은 직접적인 방법이나 간접세의 징수와 같은 우회적인 방법으로 확충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R. Luxemburg, *The Accumulation of Capital* (Monthly Review Press, 1968)를 참조할 것. 사회주의의 경우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동결 등을 통해 축적재원을 확충해왔다. 이러한 축적재원의 확충이 경제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자. 이를 다음의 국민소득, 공업총생산, 공업부문 국가기본건설투자(고정자본투자)의 증가율추이를 통해 분석해보자.

1959, 60년을 전후로 국민소득, 공업총생산의 성장추세가 상대적으로 고성장추세에서 저성장추세로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공업부문의 고정자본투자 증가율은 변동은 심하지만 비슷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적어도 공업부문에 한해서는 과거의 투자수준을 유지하려 했고, 이를 위해 축적재원을 확보해왔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왜 투자수준은 과거수준을 유지한 반면, 공업총생산의 증가율은 하락했는가? 거시경제적 측면에 국한해 본다면, 칼레츠키(Kalecki)의 사회주의 성장이론을 통해 설명 가능하다.⁴⁷⁾ 성장이 가속화됨에 따라 노동력부족, 투입물에 대한 수입수요의 증가, 특정 산업의 병목현상(bottleneck) 등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때 과거와 같은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거보다 많은 투자를 요구하게 되나, 기본적인 소비를 보장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축적을 무한정 확대할 수 없다. 그 결과 계획당국은 노동력부족, 수입수요의 증가, 병목현상 등의 문제에 따른 자본산출계수의 증가와 소비제약을 감안하여 적정투자율과 성장률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들 문제들에 직면하게 되면, 투자율이 과거와 같다 하더라도 성장률은 과거에 비해 떨어지게 된다.⁴⁸⁾ 더욱이 북한처럼 자원빈국이면서 에너지를 포함한 선도산업이 빈약한 경우 자력갱생의 노선을 추구하게 되면, 자본산출계수를 더욱 증가시켜 성장률을 더욱 하락하지 않을 수 없다.

요약하면, 국내시장을 겨냥한 자력갱생노선과 이의 조응으로서 내부축적체계에 토대를 둔 성장방식은 성장이 가속화됨에 따라 생산요소의 공급

47)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영훈, "북한의 성장전략과 위기의 기원: 1956-64년" 을 참조할 것.

48) 다음의 단순화된 성장식을 참조하라. $r_{t+1} = \frac{i_t}{m_{t+1}}$ (r_{t+1} : t+1기의 성장률, i_t

($\frac{I_t}{Y_t}$): 투자율, m_{t+1} : 자본산출계수)

제약에 직면하게 된다. 칼레츠키가 지적한 노동력부족, 투입물에 대한 수입수요의 증가, 특정 산업의 병목현상 등이 그것이다. 그 결과 자본산출계수가 증가하면서 성장률이 하락하게 되는데, 자금자족적 성격이 강할수록 이것의 정도는 심화된다. 따라서 중공업 우선발전이 '자력갱생'의 토대라는 북한의 논리는, 역으로 '자력갱생'이 중공업 우선발전을 저해한다는 논리에 의해 모순에 빠지고 만다. 이것이 북한의 자력갱생 축적체계가 안고 있는 딜레마인 것이다.

V. 맺음말

1957년 북한은 현행 경제제도의 원형을 형성한 가격 및 조세제도의 개정을 단행했다. 본고는 이 제도개정의 배경과 내용, 그리고 그것의 영향을 '자립적 민족경제'노선과의 관련 속에서 입수 가능한 북한의 1차자료에 근거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매우 제한된 자료에 따른 분석의 한계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정적으로 다음의 몇 가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1956년 대외관계의 악화, 그리고 그에 따른 원조수입의 단절이 예상되면서, 축적재원을 자력으로 확충할 내부축적체계의 구축이 요구되었다. 1957년의 가격 및 조세제도의 개정은 이런 요구를 수용한 축적체계의 전환이었다. 그것은 사회주의의 일반적 축적 방식인 공업이 농업을 그리고 중공업이 경공업을 '수탈'하는 방식으로, "가격차"(공산품소비재의 도매가격과 소매가격의 차, 알곡의 시장가격과 수매가격의 가격차)를 이용하여, 주민들의 소득으로부터 축적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둘째, 1957년의 가격 및 조세제도의 개정의 결과, 거래세의 주민부담을 주민들의 거래세부담은 큰 폭으로 증가하여 거래세/총세입은 1956년 27%에서 57년 47%, 58년 60%로 거래세의 비중이 대폭 확대되었으며, 수매가격인하로 1957년 이후 60년대 중반까지 농민들은 알곡수매의 약 $18 \pm 10\%$ 정도를 '수탈'당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축적체계 전환의 결과 특히 1950년대 후반 도·농간의 소득격차는 확대되었다. 이에 더해 북한은 투자수요의 확대 및 균비증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도시 근로자의 실질임금 수준을 동결시킴으로써 축적재원을 확보했다. 그 결과 60년대 이후 전체 주민들의 소득수준은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체되기에 이른다.

넷째, 이처럼 주민들의 일방적 희생을 바탕으로 축적재원을 확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60년대 이후 성장률은 상대적으로 둔화되었다. 이것은 거시경제적 측면에서는 노동력부족, 투입물의 수입수요 증가, 특정 산업의 병목현상 등의 공급제약의 문제에 직면하면서 투자효율이 떨어지는 데 원인이 있다. 더욱이 북한처럼 자급자족적인 자력갱생노선을 추구하는 경우 이런 문제는 보다 심화된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부 록〉

① 1957년 이전의 조세 및 가격체계

다음 본문에 제시된 기록들을 수식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I: 생산수단생산부문, II: 소비재생산부문, C: 생산수단(중간재)의 가치, V: 임금, Sa: 이윤, Sb: 거래수입금).

“1956년 공업부문의 재정계획에서 생산물 판매수입 총액 중 생산물 원가는 64.3%, 이윤은 17.6%, 거래수입금은 18.1%를 차지하였으며 국영공업부문의 수익성은 생산수단생산에서 21.7%, 소비재생산에서 36%에 달하였다.”

우선, 1956년 공업부문의 재정계획에 따르면 생산수단생산과 소비재생산부문의 비중은 약 6:4로 추정된다. 여기서 수익성은 북한의 「경제사전」에 따르면, 수익성=(이윤(기업소순소득)/판매원가(완전원가))*100으로 규정된다(판매원가는 완전원가라고도 하며 보통 원가라고 한다. 제품생산과 판매에 대한 총지출의 화폐적 표현으로서, 생산원가+판매비이다). 1956년도의 재정계획상의 자본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이하의 서술은 가치가 아니라 가격 기준이다). C+V(원가=중간재+임금)=64.3%, S(이윤+간접세)=17.6+18.1=35.7(%)이 된다. 공업전반의 수익성은 17.6/64.3=27.37%인데, 이를 생산수단생산부문과 소비재생산부문의 수익성으로 구분하여 보면 각각 21.7%, 36%이므로 $27.37 = a*21.7 + (1-a)*36$, a(생산수단 생산부문이 비중치)=0.6034이 된다. 즉 1956년 생산수단 생산부문의 비중은 약 60%로 계산되고 있다

$$\begin{aligned} \{(I(C+V)+II(C+V)) : (ISa+IISa) : (ISb+IISb)\} &= 64.3 : 17.6 : 18.1 \\ \{(I(C+V)+II(C+V)) : (ISa+IISa)\} &= 64.3 : 17.6 \quad (1) \\ I(C+V) : ISa &= 100 : 21.7 \end{aligned}$$

$$\Pi(C+V) : \Pi Sa = 100 : 36 \quad (2)$$

(2)를 (1)식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64.3\{I Sa + \Pi Sa\} &= 17.6\{(I(C+V) + \Pi(C+V))\} \\ 64.3\{0.217 * I(C+V) + 0.36 * \Pi(C+V)\} \\ &= 17.6\{(I(C+V) + \Pi(C+V))\} \\ 3.65 I(C+V) &= 5.55 \Pi(C+V) \\ I(C+V) &= 1.52 \Pi(C+V) \end{aligned} \quad (3)$$

(3)식을 다시 (2)식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I Sa &= 0.217 * 1.52 \Pi(C+V) = 0.33 \Pi(C+V) \\ \Pi Sa &= 0.36 \Pi(C+V) \end{aligned} \quad (4)$$

이제 (2), (3), (4)식을 이용하여 부문간의 구성비율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앞에서 추정된 것처럼, I, II부문의 가치의 비율은 60: 40이다. 그리고 "1956년 재정계획에서 공업부문의 이윤과 거래수입금간의 상호관계는 1 : 1.03"이다.

$$\begin{aligned} \{I(C+V) + I Sa + I Sb\} : \{\Pi(C+V) + \Pi Sa + \Pi Sb\} &= \\ \{1.52 \Pi(C+V) + 0.33 \Pi(C+V) + x \Pi(C+V)\} : \\ \{\Pi(C+V) + 0.36 \Pi(C+V) + y \Pi(C+V)\} &= (1.52 + 0.33 + x) : \\ (1 + 0.36 + y) = (1.85 + x) : (1.36 + y) &= 0.6 : 0.4 \\ 0.4x - 0.6y = 0.076 = 0.08 \end{aligned} \quad (5)$$

$$\begin{aligned} (0.33 + 0.36) : (x + y) &= 1 : 1.03 \\ x + y &= 0.71 \end{aligned} \quad (6)$$

(5)와 (6)식에서 $x = 0.51$, $y = 0.20$ 가 된다.

$$\begin{aligned} \text{따라서 } \{I(C+V) + I Sa + I Sb\} : \{\Pi(C+V) + \Pi Sa + \Pi Sb\} \\ = (1.52 + 0.33 + 0.51) : (1 + 0.36 + 0.20) &= 2.36 : 1.56 \\ I(C+V) : I Sa : I Sb &= 1.52 : 0.33 : 0.51 \\ (= 64.4\% : 14.0\% : 21.6\%) \end{aligned}$$

$$\begin{aligned} \Pi(C+V) : \Pi Sa : \Pi Sb &= 1.00 : 0.36 : 0.20 \\ (= 64.1\% : 23.1\% : 12.8\%) \end{aligned} \quad (7)$$

② 1957년 조세제도 및 도매가격 개정 이후의 공업부문 조세 및 가격체계

1957년 도매조세 및 가격제도 개정에 관한 서술들을 수식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위의 (7)식을 참조하라).

“도매가격이 새로 비준되었으며 소매가격의 구성요소가 달라졌다. 이상과 같이 원가수준의 변동(노임의 인상, 원재료비 및 감가상각비의 변동 등으로 약 30% 제고됨)을 타산하고 이윤의 폭을 조절하였으며 거래세의 징수를 기본상 폐지한 결과 도매가격의 수준에 일정한 변동이 생겼다. 물론 부분적으로 인상된 것도 있으나 공업생산물 총체적으로 볼 때 약 6%가 종전보다 저하되었다.”

“1957년 가격개정에서 소매가격의 수준은 변동시킴이 없이 기업소 도매가격을 개정하여 가격구성에서 수익성률이 3~5%로 조절됨으로써 이윤의 폭은 축소된 반면에 거래수입금의 폭은 확대되었다.”라는 기록을 수식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매가격의 원가수준의 30% 상승과 수익성률 4%(3~5%)로 조절”을 고려하면, 과거 $I(C+V) : ISa : ISb = 1.52 : 0.33 : 0.51$ 이 $I(C+V) : ISa : ISb = 100 : 4 : 0$ 으로 개정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개정된 I부분의 가격구성은 $I(C+V) : ISa = 1.52 * 1.3 : x = 100 : 4$ 가 되며, $I(C+V) : ISa = 1.98 : 0.0792 \approx 1.98 : 0.08$ 이 된다. 개정된 $ISa = 0.08\Pi(C+V)$ 이다.

$$I(C+V) : ISa = 1.98 : 0.08 \quad (8)$$

$$ISa = 0.08\Pi(C+V), \{I(C+V) + ISa\} = 2.06 \Pi(C+V) \quad (9)$$

둘째, II부분의 경우는 $\Pi(C+V)$ 에서 ΠC 는 도매가격(중간재로 투입되는 I부분의 가격) 변동을 반영하여 과거의 비중에서 2.06/2.36 만큼 감

소한다. 즉 ΠC 는 $1*(53.7/64.1)*(2.06/2.36) = 0.73$ 가 된다. 한편 원가의 다른 부분 즉 임금과 기타의 비중은 30% 증가했다고 가정하면, 임금과 기타가 $1.3*(10.4/64.1) = 0.21$ 이 된다. 따라서 $\Pi(C+V) = 0.73+0.21 = 0.94$ 이 된다. 그 결과 $\Pi(C+V) : \Pi Sa : \Pi Sb = 1.00 : 0.36 : 0.20$ 에서 $\Pi(C+V)$ 의 상대적 비중이 0.94이 됨에 따라 $0.94 + \Pi Sa + \Pi Sb = 1.56$, $\Pi Sa + \Pi Sb = 1.56 - 0.94 = 0.62$ 가 된다.

$$\Pi Sa + \Pi Sb = 0.62 \quad (10)$$

셋째, "1958년 개정계획에서 인민경제 총이윤과 거래수입금간의 상호관계는 1 : 2.9로 변동"되었으므로, 이는 $(I Sa + \Pi Sa) : \Pi Sb = 1 : 2.9$ 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런데 (8)에서 $I Sa = 0.08\Pi(C+V)$ 이므로, 그것은 $(0.08*0.94 + \Pi Sa) : \Pi Sb = 1 : 2.9$, $(0.08 + \Pi Sa) : \Pi Sb = 1 : 2.9$. 이는 다시 $\Pi Sb = 2.9(0.08 + \Pi Sa)$ 가 된다.

$$2.9\Pi Sa - \Pi Sb = -0.23 \quad (11)$$

이제 (10) (11)식에서 $\Pi Sa = 0.10$, $\Pi Sb = 0.52$ 이 도출된다. 이 결과를 가격구조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I(C+V) + I Sa + I Sb\} : \{\Pi(C+V) + \Pi Sa + \Pi Sb\} =$$

$$(1.98+0.08) : (0.94+0.10+0.52) = 2.06 : 1.56$$

$$\text{생산 수단 } I(C+V) : I Sa : I Sb = 1.98 : 0.08 : 0$$

$$(\text{= } 96.1\% : 3.9\% : 0\%)$$

$$\text{소비 수단 } \Pi(C+V) : \Pi Sa : \Pi Sb = 0.94 : 0.10 : 0.52$$

$$(\text{= } 60.3\% : 6.4\% : 33.3\%)$$

$$\text{공업 전반 } (C+V) : Sa : Sb = 2.92 : 0.18 : 0.52$$

$$(\text{= } 80.6\% : 5.0\% : 14.4\%)$$

〈참고 문헌〉

- 강윤희. "사회주의 경제통합에 관한 연구: CMEA를 중심으로." (서울대학
원 의교학과 석사학위 논문). 1990.
- 공산권문제연구소. 「북한총감 '45-'68」. 서울: 공산권문제연구소. 1968.
- 국가계획위원회 중앙통계국. 「1946-1960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인민
경제발전 통계집」. 평양: 국립출판사. 1961.
- 국립농업출판사. 「농업경제연구반 참고자료」. 평양: 국립농업출판사.
1957.
- 국토통일원. 「조선노동당대회자료집」. 제2집. 1988.
_____. 「조선노동당대회자료집」. 제3집. 1988.
- 근로자편집위원회(1956). "질의응답: 배급제는 왜 필요하며 어떤 때라야
폐지될 수 있는가." 「근로자」. 제10호.
- 김덕윤. 「재정사업경험」.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8.
- 김석빈 편. 「사회주의화폐제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6.
- 김연철. "북한의 배급제위기와 시장개혁전망."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1997.
- 김운중. "1957년도산 양곡수매사업의 성과적 보장을 위한 제 방도." 「경
제건설」. 평양: 경제건설사. 1957. 10.
- 김일성. "1959년 신년사." 「김일성저작집1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_____. "1960년 신년사." 「김일성저작집1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_____. "조선로동당 제4차 당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
고." (1961) 「김일성저작집1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_____. "우리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 (조선로동당중앙
위원회 제4기제8차 전원회의에서의 연설, 1964) 「사회주
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_____. "사회주의건설에서 재정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데 대하여." (재정
부문일군협의회에서 한 담화, 1968). 「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3」.
_____. "조선로동당 제5차 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

- 고.”(1970) 「김일성저작선집5」.
- _____. “제2차 7개년계획작성방향에 대하여.” 「김일성저작집29」.
- 김지균. “공업생산물의 원가.” 「근로자」. 1962. 7(상).
- 남춘화. “현 시기에 있어서 농산물수매가격 제정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 「경제건설」. 평양: 경제건설사. 1957.11.
- 리신형 편. 「경제상식」.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0.
- 리진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사회주의적농업로동보수제에 관한 리론」.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6.
- 박 진. “북한재정의 현황과 추이.”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1994. 사회과학출판사. 「경제사전1, 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 서동만. “北朝鮮における社會主義體制の成立: 1945-61.” (東京大學大學院 綜合文化研究科 박사학위논문). 1995.
- _____. “50년대 북한의 곡물생산량 통계에 관한 연구.” 「월간 통일경제」. 1996.2.
- 안광준. 「우리나라 인민경제에서의 사회주의적 축적」. 평양: 사회과학원출판사. 1964.
- 이영훈. “북한의 성장전략과 위기의 기원: 1956-64년.” 한국사회경제학회. 「신자유주의와 국가의 재도전(사회경제평론13호)」. 서울: 풀빛. 1999.
- 정운영. 「노동가치이론 연구」. 서울: 까치. 1993.
- 정태식. “계획가격 형성과 관련한 몇 가지 문제.” 「경제건설」. 평양: 경제건설사. 1957.10.
- 조룡식. “우리나라 상업의 발전.” 「우리나라 인민경제발전」. 평양: 국립출판사. 1958.
- 조선로동당출판사. 「기본건설사업발전을 위한 우리 당의 정책」. 1961.
-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각 연도.
- 최수영. “북한의 농업정책과 식량문제 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 통일원. 「북한경제통계집」. 서울: 통일원. 1996.
- 현대조선문제강좌편집위원회. 「社會主義の經濟」. 1988. 「북한의 경제」.

- 광주: 도서출판 광주. 1988.
- Marx, K. 김수행 역. 「자본론1」. 서울: 비봉출판사. 1991.
- Goto, Fujio. *Estimates of The North Korean Gross Domestic Product 1956-1959*, Kyoto: Kyoto Sangyo Univ. Press. 1990.
- Wilczynski, J. *Economics of Socialism*, 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Ltd. 1982.
- Dobb, M. *Soviet Economic Development Since 1917*. London: Routledge & Kegan. 1972. 임휘철 역. 「소련경제사」. 서울: 형성사. 1989.
- Kalecki, M. "Problems in the Theory of Growth of a Socialist Economy." (1959) *Socialism: Collected Works of M. Kalecki*. vol 3. Oxford: Clarendon Press. 1992.
- . "Introduction to the Theory of Growth in a Socialist Economy." (1963) *Socialism: Collected Works of M. Kalecki*. vol 4. Oxford: Clarendon Press. 1993.
- Bazhanova, Natalia. 양준용 역. 「기रो에 선 북한경제-대외경협을 통해 본 실상-」.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1992.
- Gregory, Paul R. & Stuart, Robert C. *Soviet Economic Structure and Performance*(2nd ed.), NewYork: Harper & Row, Publishers, Inc. 1981.
- Бэк Чжун Ки. *СТАОВЛЕНИЕ ПОЛИЧЕСКОЙ СИСТЕМЫ В ВКДР И РОЛ Ъ СССР (после корейской войны)*. Москва: Издательство Москов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1997.